「지로자동계좌이체」약관



제1조 약관의 적용

지로 자동계좌이체제도(이하 '자동이체' 라 합니다)에 의하여 각종 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자(이하 '납부자'라 합니다)와 KB국민은행(이하 '은행'이라 합니다)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 2 조 영업일

다음 각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합니다

- 1.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
- 2. 토요일
- 3. 근로자의 날)

제 3 조 출금

- ① 납부자가 지급하여야할 요금에 대하여 은행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없이 납부자의 지정계좌에서 출금을 의뢰하는 기관(이하 '이용기관'이라 합니다) 이 지정하는 납기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에 출금 대체납부합니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증서 없이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.

제 4 조 과실책임

- ① 은행 시스템 오류 및 장애로 인해 발생한 납부자 피해는 은행이 부담합니다.
- ②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(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)이 납기일 현재 이용기 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, 예금의 지급제한, 약정대출의 연체 등 납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제 5조 부분출금

부분출금방식으로 승인된 이용기관의 경우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에 비해 예금잔액이 부족하여도 동 잔액을 전액 출금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자동이체 대금으로 입금된 어음, 수표 등이 부도처리되는 경우에는 현금이체분을 포함한 전액이 출금취소 됩니다.

제 6조 출금 우선순위

납기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 출금 우선 순위는 은행에서 정한 <별첨>자동이체 출금우선순위에 따릅니다.



제 7 조 최초 개시일

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이용기관으로부터 사전통지받은 납기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

제 8 조 자동이체 신청

은행은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
- 1. 은행이 납부자로부터 서면(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의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 방법
- 2. 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서면, 전화녹취, 음성응답시스템(Audio Response System)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게 전달(전자적 방법으로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방법. 단, 이 경우 납부자 본인확인은 이용기관이 합니다.

제 9조 해지

- ① 자동이체 해지는 은행 창구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능하며,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.
- ② 이용기관이 출금요청을 한 당일에는 자동이체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제 10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

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은행 영업시간 내의 예금잔액(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)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며, 출금 시 은행은 출금금액 및 출금일자에 대한 정당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.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합니다.

제 11 조 정보제공

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계좌정보(거래은행명, 지점명, 계좌번호, 생년월일, 사업자등록번호 등)가 이용기관에 제공되며, 제공된 정보는 동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제 12 조 계좌이동서비스

- ① 지로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,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.
- ② 은행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(www.payinfo.or.kr)에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조회 및 해지, 출금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.
- ③ 납부자가 은행 지점, 인터넷뱅킹(모바일뱅킹 포함),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(www.payinfo.or.kr), 애플리케이션 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④ 납부자가 은행 지점, 인터넷뱅킹(모바일뱅킹 포함),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(www.payinfo.or.kr),



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당행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, 당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 됩니다.

⑤ 납부자가 은행 지점, 인터넷뱅킹(모바일뱅킹 포함),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(www.payinfo.or.kr),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이용중인 자동이체는 해지 처리됩니다.

제 13 조 은행의 자동이체 임의 해지

자동이체 등록계좌가 1년 이상 자동이체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은행에서 해당 납부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결제원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이용기관에 대한 신청등록 내역은 해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.

제 14조 이용기관에 신청시 약관 적용

제8조의 방법에 따라 자동이체신청서를 이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 15 조 약관의 변경

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따릅니다.

제 16 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

- ① 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,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.
-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,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, 전자금융감독규정,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, 전자서명법을 적용합니다.

부 칙

구 국민은행의 (지로)자동계좌이체 및 구 주택은행의 (지로)자동계좌이체는 2002.9.23부터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.

부 칙

(시행일) 제12조 이 약관은 2020.5.26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20.12.10부터 시행합니다.

3



[별첨] 자동이체 출금우선순위

1. 영업개시전 : 정기예금 이자지급

2. 영업시간중 : 타행자동이체, 대출이자, 신탁, 요구불이체, 선일자 등

영업점 직접처리분

3. 영업시간후 : 다음 그룹 순서에 의해 처리되며, 그룹내 처리 순서는 없음.

-1그룹: 대출이자, KB 카드대금, 영업점 개별 처리건(APT 관리비 등)

- 2 그룹: 대외청구자금(VAN, CMS, GIRO 등)

- 3 그룹 : 기타 수신 계좌이체, 적립식 예금이체(신탁포함), 요구불간 이체 등

※ 납부자자동이체 :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